

8. 宅地開發促進法施行令 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90號 1995. 4. 11

1. 개정이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특성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권한위임을 확대하고, 동사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택지개발계획 승인권한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함.

나. 지자체로 택지개발계획승인권한이 대폭 위임(330만^m2 미만)됨에 따라 도로·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면서 계획적 택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시 토지이용·제한사항을 명기하게 함으로써,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이용·제한사항을 미리 알게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도록 함.

라.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의 계획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 함.

마. 택지개발계획승인시 택지공급승인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별도의 택지공급승인생략하도록 하여 업무의 간소화를 기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도시국 택지개발과장, 전화번호

503-73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